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경상북도 산림산업과-526(2019.01.21.)호와 관련하여 자연휴양림 예약 정책 표준화 조례안에 따라 조례의 전부를 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간 변경(제5조)

- 사용 첫날 오후 3시부터 퇴실일 오전 12시 →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

나. 이용신청방법 변경(제11조)

- 당초 : 예약 후 24시간 내 미입금 시 취소
- 변경 : 이용 신청 시 다음날 23:50분까지 납부하고, 사용예정일 7일전에는 당일 3시간 이내 사용료 납부

다. 자연휴양림 성수기 일자 변경(별표1)

- 당초 : 매년 7월1일 ~ 8월 31일 → 변경 : 매년 7월15일 ~ 8월 24일

라.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(별표2) 삭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가족지원과-20713(2019. 5. 27.)〕

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4701(2019. 5. 20.)〕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2019. 5. 28 ~ 2019. 6. 17(20일간)〕

5. 검토의견

○ 경상북도 산림산업과-526(2019.01.21.)호와 관련하여 자연휴양림 예약 정책 표준화 조례안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,

○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간, 이용 신청방법, 성수기 일자 등을 개정하고,

위약금 처리기준(별표2)을 삭제하는 등 표준 조례안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